

보험금 지급절차 안내장

1.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

- 고객님의 금번 발생하신 보험사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, 『보험금 청구 유형별 구비서류 안내장』을 참고하시어 해당 서류를 접수하여 주시면 신속히 처리하여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- 경우에 따라서는 『보험금 청구유형별 구비서류』 이외에도 추가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
- 경우에 따라 손해사정을 위한 방문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, 이런 경우 본회와 계약 체결된 손해사정업체의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을 드립니다.
- 보험금 청구접수 방법은 등기우편, 팩스, 내방의 방법이 있습니다.
- 보험금을 받으실 통장은 보험수익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어야 합니다. 단,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 계좌로 청구하셔야 합니다.

보내실곳	등기우편	서울 영등포구 63로 50 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사업부 지급보상팀(우편번호:07345)
	팩스	02-3278-969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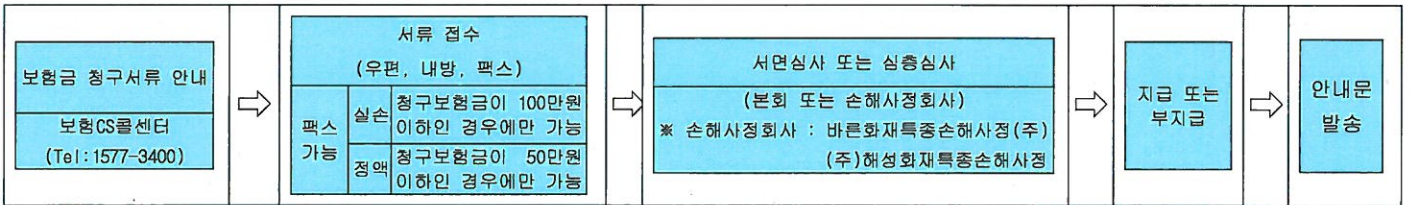
2.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

- 보험금 청구 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(상법 제662조)
 ※ 단, 2015.3.12(상법 개정일) 이전 발생한 사고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.(실제 치료일자 기준)

3.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

- 제출하여 주신 서류가 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사업부에 접수되는 경우 보상처리 담당자가 지정되며 SMS서비스를 통해 담당자 성명과 연락처가 통보됩니다.
- 서류발송 전 문의사항, 보상담당 부서, 담당자 연락처 등은 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CS콜센터(Tel : 1577- 3400(2번 버튼)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(상당가능시간 : 평일 09 ~18시)

<보험금 심사 절차>



4.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

-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,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심층심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. (손해사정법인 :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해 인가받은 업체)
- 본회가 손해사정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본회(한국교직원공제회)가 부담합니다. 또한 가입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.

5. 장해진단서 제출시 유의사항

- 장해진단서를 제출 하시는 경우에는 3차 의료기관(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)에서 진단을 요청 드리며, 보험가입 시기에 따른 약관의 변경으로 심사를 위한 필요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병원 진단서 발급 전에 보험CS콜센터(Tel: 1577-3400)에 문의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.

6.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(비례보상) 등

-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타보험사의 상품에 복수로 가입하신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별로 보험금을 분담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.

7. 보험금 지급 안내 및 심사 절차 조회 방법

-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접수일로부터 (“접수일”이라 함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가 회사에 도착한 날을 말합니다.) 15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. 다만, 서류가 미비 되었을 경우에는 그 서류가 보완되어 접수된 날로부터,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조사완료일로부터 기산합니다.
- 본회는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본회가 정한 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.
- 보험금 심사결과(지급, 부지급 등)를 서면, 유선, SMS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.
- 본회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, 지급예정일에 대하여 피급여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, 유선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.
-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하신 계약내용, 청구하신 보험금 지급심사 진행상황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8. 재심사 청구

- 본회의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회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재심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
- 인터넷 접수: 홈페이지(www.ktcu.or.kr) > 고객상담센터(1:1 상담)에 접속하여 신청

- 등기우편접수: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 (여의도동 60) 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사업부 지급보상팀(우편번호:07345)